

목재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(제24조제1항 관련)

1. 원목생산업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목(立木)·죽(竹)을 벌채(원목의 유통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하는 사업

구분	사업 범위	등록기준		
		기술인력	자본금	시설
제1종	벌 채 (벌 채 량 제한 없음)	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	5천만원 이상	사무실
제2종	벌 채 (벌 채 량 연간 5,000m ³ 이하)	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	1천만원 이상	사무실

2. 제재업: 목재를 제재(제재목,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,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, 목탄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, 그 제제한 산물의 유통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하는 사업

구분	사업 범위	등록기준		
		기술인력	자본금	시설
제1종	제재목 또는 단판(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·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)의 생산	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	3천만원 이상	사무실
제2종	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	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	5천만원 이상	사무실
제3종	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한 목재제품	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	5천만원 이상	사무실

	의 생산	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		
제4종	목탄, 성형목탄, 목재펠릿, 임산펠 릿, 목재칩, 톱밥, 목분(나무가루) 의 생산	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산가공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	3천만원 이상	사무실

3. 목재수입유통업: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

사업 범위	등록기준
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·유통	사무실 및 보관시설

비고

1. 기관·단체·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등록
기준란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
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.
2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자가
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
각각의 목재생산업자는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.